

『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6월 12 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노사민정협의회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자를 협의회 구성에 포함시켜 민의를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, 협의회 사무국장을 현행 조직에 맞게 해당 부서장으로 변경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4조 협의회 구성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자 추가.
- 제6조 협의회 사무국장을 현행 조직에 맞게 해당 부서장으로 변경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1일(목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3, 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당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자

제6조제2항 중 “기업지원과장”을 “일자리창출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협회의의 구성) ①·② (생략)	제4조(협회의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5. 당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자</u>
5. (생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사무국) ① (생략)	제6조(사무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, 시 <u>기업지원과장</u> 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<u>일자리창출과장</u> ----- 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 법령	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☐ 제19조(지역노사정협의회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 조례 정비 대상	
관련 자료	

관련법령 발제사항

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

제19조(지역노사정협의회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자 추가 및 현행 조직에 맞게 사무국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없음.

4. 작성자

- 산업위원회 김 정 헌 의원